

의안번호	제 73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0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09월 일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9일

발의자 : 김호경, 이동우, 김종필,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가족”의 뜻 변경(안 제2조)

나.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제6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p> <p>2. (생략)</p> <p>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부모----- -----.</p> <p>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범위----- ----- 필요한 ----- -----.</p>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관계법령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2. 11. 21., 단서신설 2012. 11. 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 12. 11., 개정 2019. 3. 11., 2020. 2. 26.>
2. <생 략>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2. 26.>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

국지사) <개정 2020. 2. 2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30., 본항개정 2019. 3. 11.>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 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 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본조신설 2013. 12. 11.]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개정 2006. 10. 12.,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08. 4. 16.,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이하 생략>